

# 위험관리기법

〈전호에 이어 Risk Financing 방법이 이어집니다〉

## ⑤ 위험발견의 정보원

전호에서는 위험원천의 대상이 될 8개항목을 열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을 확실하게 발견 예방키 위해서는 이와같은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보원(情報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정보원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

(a) 내부정보원

(1) 재무Data

내부정보원으로는 재무Data를 우선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의 자산·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수지의 크기·원천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고찰의 대상이 된다. 즉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손실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된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공제된 채 장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반드시 exposure(위험



강 원 회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노출)의 크기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감가상각을 전부 끝내면 실제적으로는 가동되고 있는 데도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유동자산중의 수입계정은 장래에 있게 될 징수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록의 보관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손익계산서는 정보원으로 중요하지는 않으나 특별손실의 항목 등은 과거의 손실규모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줄 것이다. 또 장기간에 걸쳐 분석을 하여 보면 손실발생의 동향(빈도, 강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의 손실기록

기업내부의 손실기록은 위험의 분석뿐만 아니라 Risk Control에도 이용된다. 이런 기록이 위험분석에 이용될 경우는 장래의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손실기록에 있어서도 손실발생빈도를 보기 위해서인가, 손실강도를 보기 위해서인가에 따라 이용목적이 다를 것이다. 손실강도는 대손실의 발생에 관한 정보가 될 것이고, 손실빈도이면 빈도분포가 요구될 것이다. 어쨌든 손실기록이 가치를 지니자면 경향치(傾向値)가 파악될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통계가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와같은 Data를 어느 정도 정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각 기업체는 외부에 대해서 손실의 발생 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공공 기관에서의 사고발생 통보도 늦어지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조차 특정부서 대 타부서라는 도식으로 안팎을 가리는 인식도 있어

부서내에서 남모르게 처리하려는 관행도 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 사고통계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험분석상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자칫하면 대사고가 되었을지 모를 사안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손실기록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것이 손실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함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ㄷ) 연차보고서

주주에게 송부되는 연차보고서에는 재무Data 이상의 정보가 포함될 때가 있다. 예컨대 기업의 합병·매입, 장래의 건설계획, 신제품개발계획 등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이것들은 Risk management의 관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계획이 된다. 건설계획의 경우에는 안전공사 라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 기업합병에서는 상대방 기업에 생산물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준이나 배상법리가 발달되지 않은 수준으로 보아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거론될 단계는 아니나 불윈의 장래에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ㄹ) 계약서류

리스계약, 용역계약이나 각종 판매계약 등 계약서류에 관해서는 서명하기 전에 Risk Management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서 그 자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적 보장의 증거로 기업에 보험가입을 의무지우는 형태의 계약, 특정 사건발생의 경우에 상대방을 무책(無責)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Hold Harmless Agreement 형태의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태로 반환시킨다는 것을 의무화한 형태의 계약 등에 대한 평소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변

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협의의를 할 것이 요청된다.

(ㄴ) 질문표(Check List)

기업의 자산, 배상책임, 업무활동, 작업환경, 조직구조, 인사관리 등에 관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기 위해 Check List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Check List의 작성예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NO	Check 항목	Check
1	안전위생 관리자는 있는가	
2	안전위생 관리자에 의한 작업감시, 환경조사, 위생교육, 구급용구, 보호용구의 점검이 이행되고 있는가	
3	위생안전 기록은 작성되고 있는가	
4	위생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가	
5	축탁의사와의 연락은 긴밀히 취하고 있는가	
6	작업장내의 환기는 지켜지고 있는가	
7	작업장내의 채광이나 조명은 양호한가	
8	작업장내의 온도는 적당한가	
9	초음파, 소음, 진동에 대한 조치는 양호한가	
10	공장내의 색채조절은 잘 되어있는가	
11	휴식시간은 작업자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12	탈의실이나 탈의설비는 충분한가	
13	식당은 충분한 넓이로 설치되어 있는가	
14	체육활동이나 레크레이션 시설은 있는가	
15	직장의 방화관리자는 정해져 있는가 또 방화관리체제는 마련되어 있는가	
16	방재교육은 하고 있는가	
17	소화설비는 완비되어 있고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가) 소화기 (나) 소화전 설비 (다) 소방펌프설비 (라) 스프링클러 설비 (매) 포말·탄산가스·하론가스 소화설비 등	
18	화재, 지진, 풍수해시의 대응계획 및 행동에 대해 종업원은 잘 훈련되어 있는가	

(이하 생략)

(b) 면접조사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면서 진행되는 면접을 통해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exposure를 확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위험관리 관계자 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업원에게도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한다. 따라서 위험의 발견·확인을 위해서 현장 담당자로 부터 상급관리자에 이르는 계층까지 다양하게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 요청된다.

(c) Flow Chart 분석

기업의 갖가지 활동에 관한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Flow Chart 방법이 효과적이다. Flow Chart 작성방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외부의 공급자로부터 기업의 각 부분·조직을 거쳐 최종의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원재료, 상품의 유통과정을 그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내부의 공정에 대해 원자재에서 부터 완성품까지의 흐름을 Chart 로 작성하는 것이다. Flow Chart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항목이 된다.

첫째, 어떠한 사태가 flow를 방해하는가

둘째, flow의 어떤 부분이 방해를 받는가(취약성, 피상성의 확인)

세째, 파괴적 사태의 발생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네째, 어떤 형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

다섯째, 발생할 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등의 항목이다.

특히 Flow Chart의 유효성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d) 현장검사

현장의 실제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면접조사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살아있는 현장 정보수집과 문서를 통해서 얻 수 없는 exposure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실제검사에는 Risk발견의 확인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 뿐더러 문제점까지 찾아 낼 수 있는 숙련된 현장관계자를 동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적재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여간해서 확인하지 못할 것이다.

(e) 외부정보원

(1) 업계의 손실기록

어떤 기업체가 자체 손실기록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업계 전체로서는 업종 특유의 손실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손실기록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종류의 손실기록 정리가 업계 공통의 보고시스템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면 정보원으로서 신뢰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손실기록이 아니라도 어떤 나라나 지역에 있어서의 동종 업체의 손실동향도 정보로서 입수가 가능한 것이면 크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기관지

Risk Management에 관해서는 미국의 「Risk Management」(RIMS 발행)나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ARIA 발행)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방재와 보험」(한국화재보험협회 발행), 「위험과 보험」(대한재보험주식회사 발행) 외에 「위험관리」(한국화재보험주식회사 발행)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지를 참고하면 위험관리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3) 조직에의 참가

Risk Management 관계의 조직이나 세미나 등 회합에 참가하는 것도 위험의 발견·확인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Risk Management 분야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외국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는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Risk Survey 실시

보험회사 또는 방재전문기관에 의한 Risk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업체의 위험을 발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각 업종에 부응하는 위험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표(Fact Finder)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마련한 이런 종류의 Check List는 주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Peril을 대상으로한 측면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보험요율의 산출에 관한 정보입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기업체의 exposure를 찾아내는 정도의 정보파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끝으로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든다면 이 업무는 그 담당자만의 책무가 아니라 기업의 각 구성원이 전원 참석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㉞